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23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 박홍배・이기헌・강준현

이상식 • 문대림 • 민병덕

김현정 · 김남근 · 강득구

강훈식 • 한준호 • 이수진

김영진 • 이광희 • 서영교

허 영·송재봉·정태호

김성회 • 서영석 • 전종덕

의원(2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,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(제60조).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.

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. 20 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.6일(소진율 66.1%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남.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'일·생활 균형위원회'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.

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(EU)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,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'일과 삶의 균형' 및 '실노동시간 단축'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,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(안 제60조 제1항, 제4항 개정, 제8항 신설, 제60조의 신설, 제116조).

#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 중 "1년간"을 "6개월간"으로, "15일의"를 "20일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"25일을"을 "30일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에 따라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0조의2(연차 유급휴가대장 등) ①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로 해당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, 사용일수,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66조"를 "제60조제8항, 제60조의2제2항·제3항, 제66조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사용자      |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    |
| 는 <u>1년간</u> 80퍼센트 이상 출근 | <u>6개월간</u>         |
| 한 근로자에게 <u>15일의</u> 유급휴  | <u>20일의</u>         |
| 가를 주어야 한다.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②・③ (생 략)               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|
| 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          | <u>30일을</u>         |
| ⑤ ~ ⑦ (생 략)              |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| ⑧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청구 또는 사용에 따라 불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| 제60조의2(연차 유급휴가대장 등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로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|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 2조, 제48조, <u>제66조</u>, 제74조 제7항·제9항, 제76조의3제2 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, 제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
3. • 4. (생략)

③ (생 략)

| ②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고       |
|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,     |
| 사용일수, 그 밖에 고용노동부     |
|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      |
| <u> 여야 한다.</u>       |
|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연     |
| 차 유급휴가대장을 해당 연도      |
|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     |
|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   |
| 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  |
| <u>ㅇ</u> )           |
| ②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|
| 제60조제8항,             |
| 제60조의2제2항 · 제3항, 제66 |
| <u>조</u>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